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국민의료비 경감

이창우 연구위원

요약

■ 최근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선택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 강화가 선택진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선택진료의사의 렌트를 강화시킬 수 있어 선택진료비 절감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임.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 및 그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진료와 그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¹⁾.

■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정부가 선택진료제도를 통해 병원수입을 인정해준 대신 국민건강보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왜곡된 수가체계’를 조장해왔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체계에서 의료선택권이 개별적 의료비 지출에 의해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음.

1) 동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동기는 1963년 국립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후 ‘특진규정’이 민간병원으로 확산되었고 2000년 의료법령에 의해 제도화 됨.

- 이러한 비판에 맞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에서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다만, 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선택진료의 수준 제고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함.
 -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에 대하여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함.
-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선택 폭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표 1〉 선택진료의사 현황(2011. 4. 30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전체 의사 수(A)	31,372	18,815	9,841	1,192	382	1,142	
진료가능 의사 수(B)	29,935	17,979	9,292	1,155	379	1,130	
추가비용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 수(C)	12,570	7,190	4,300	588	130	362	
추가비용징수 의사 수(D)	9,279	5,605	3,025	302	93	254	
비율 (%)	D/C	73.8	78.0	70.3	51.4	71.5	70.7
	D/B	31.0	31.1	32.5	26.2	24.5	22.5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6. 14)

- 추가비용징수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그 수를 줄임으로써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늘어난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필수진료과목에 배치함에 따라 환자의 의사 선택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선택진료가능 의사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선택진료비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2〉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비중(2011. 4. 30 현재)

구분	전체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선택진료비 비중	6.5%	7.8%	4.9%	3.1%
총 진료비	17조 1,339억 원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6. 14)를 재구성함.

■ 그러나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많은 현실에서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 강화되더라도 선택의료비 지출이 절감되는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선택진료에 대한 의료비 보장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선택진료의사의 요건 강화는 비용의 증가 없이 선택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 강화가 선택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직결된다면 선택진료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대한 수요가 활성화되어 선택진료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도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 강화는 자격이 되는 선택진료의사의 렌트를 강화시켜 서비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 강화의 경우 민영의료보험의 존재를 고려할 때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kiri**